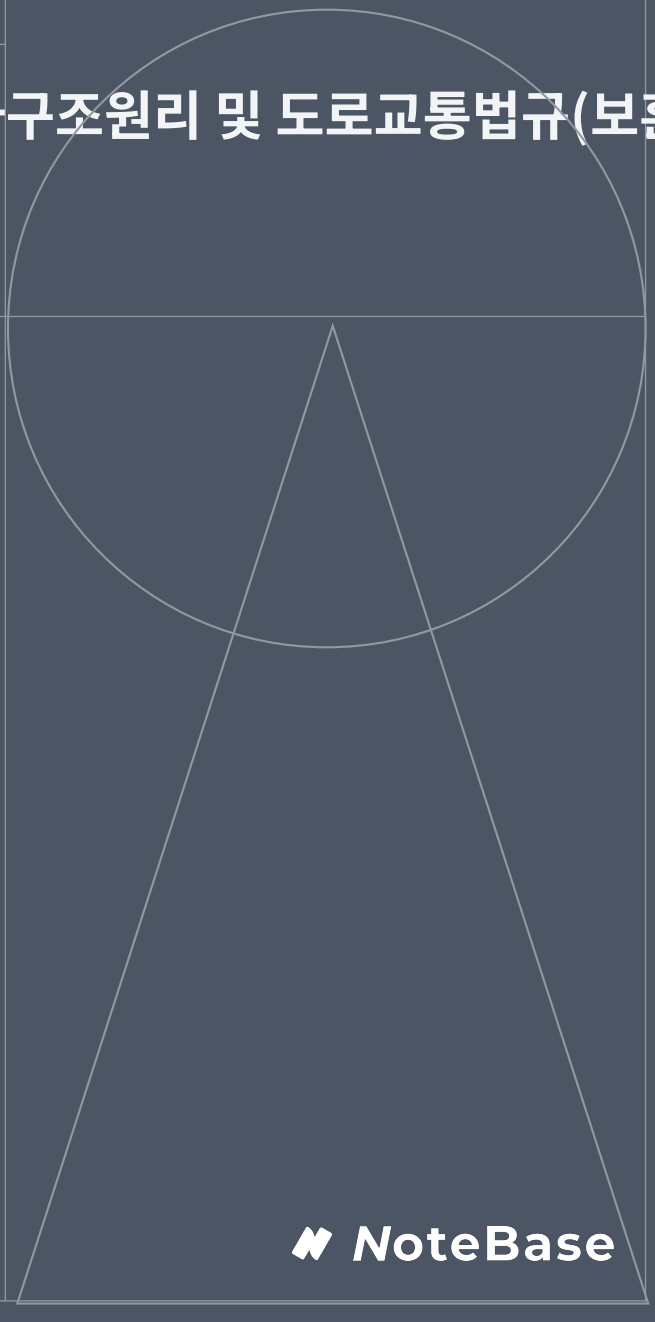
기출OX 해설집

공무원/서울시/9급 ·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(보훈청) ·



NoteBase

기출OX 해설집

공무원/서울시/9급 ·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(보훈청) · 2022 · 6월

공무원/서울시/9급 ·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(보훈청) · 2022 · 6월

문 1. 전자동 에어컨에서 증발기(Evaporator) 코어의 온도를 감지하여 과냉으로 증발기가 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센서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실내온도 센서(In-car sensor)

② 핀 서모 센서(Fin thermo sensor)

③ 외기온도 센서(Ambient sensor)

④ 냉각수온 센서(Water temperature sensor)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핀 서모 센서는 **증발기 코어의 온도**를 감지한다. 이 온도 신호를 이용해 냉방 작동을 제어하여 증발기가 지나치게 차가워져 빙결되는 것을 방지한다.

핵심 풀이

증발기는 냉매가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의 열을 흡수하는 장치이다. 코어가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표면의 수분이 얼 수 있으므로, **핀 서모 센서**로 증발기 핀의 온도를 감지한다. 제어 장치는 이 신호를 받아 빙결 우려가 있을 때 압축기 작동을 중단하는 등 냉방을 제어한다.

구별 기준은 **어느 부분의 온도를 감지하는가**이다. 실내온도 센서는 차 안의 공기, 외기온도 센서는 차 밖의 공기, 냉각수온 센서는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한다. 이들은 증발기 코어의 온도를 직접 감지하는 핀 서모 센서와 측정 대상이 다르다.

NoteBase

문 2. 자동변속기의 미끄러짐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는 댐퍼클러치(Damper clutch)의 비작동 영역의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냉각수 온도가 70°C에서 95°C 사이로 안정적일 때

② 내연기관의 회전수가 800rpm 이하로 안정적일 때

③ 주행 중 정상적으로 변속하는 중일 때

④ 스로틀 밸브 개도가 급격히 감소할 때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냉각수 온도가 70°C에서 95°C 사이로 안정된 상태는 **댐퍼클러치의 비작동 조건이 아니다**. 충분히 예열되어 차속·부하 등 다른 작동 조건까지 충족하면 댐퍼클러치를 연결하여 토크컨버터의 미끄러짐 손실을 줄일 수 있다.

선지별 해설

댐퍼클러치는 토크컨버터의 입력 측과 출력 측을 기계적으로 연결하여 회전속도 차이로 생기는 동력 손실을 줄이는 장치이다. 직결을 해제하면 유체를 통한 동력 전달이 이루어져 회전속도 차이나 토크 변화를 완충할 수 있다. 구체적인 작동·해제 기준은 차종과 제어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.

① X: 냉각수 온도가 70°C에서 95°C 사이로 안정된 상태는 예열된 정상 운전 상태이므로, 그 자체가 직결을 금지하는 조건은 아니다. 온도와 관련된 비작동 조건은 **냉각수 온도가 낮아 충분히 예열되지 않은 상태** 등이다. 정상 수온에서는 차속·부하 등 다른 작동 조건을 충족할 때 댐퍼클러치를 연결할 수 있다.

② O: 기관 회전수가 800rpm 이하인 저회전 영역에서는 댐퍼클러치를 해제한다. 이때 직결을 유지하면 구동계의 부하가 기관에 직접 전달되어 **진동이나 시동 꺼짐**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, 유체를 통해 동력을 전달하도록 한다.

③ O: 주행 중 변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기어비가 바뀌면서 기관과 변속기 입력축 사이에 필요한 회전속도 관계도 달라진다. 댐퍼클러치를 해제하면 토크컨버터가 이 차이를 완충하여 **변속 충격을 줄일 수 있다**. 정상적인 변속이라도 변속 중에는 비작동 조건에 해당한다.

④ O: 스로틀 밸브 개도가 급격히 감소하면 기관의 발생 토크와 구동계에 전달되는 토크가 급변한다. 이때 직결을 해제하여 유체 전달로 전환하면 **급격한 토크 변화에 따른 충격**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비작동 조건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3. 내연기관 자동차의 냉각장치 구성부품 중 방열기(Radiator)의 요구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기흐름 저항이 적을 것

② 가볍고 작으며 강도가 클 것

③ 냉각수 흐름 저항이 적을 것

④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적을 것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방열기는 냉각수의 열을 공기로 내보내는 장치이므로 **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커야** 한다. ④의 '방열량이 적을 것'은 반대로 설명한 것으로,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어야 냉각에 유리하다.

선지별 해설

① O: 방열기는 내부를 흐르는 냉각수의 열을 외부 공기로 전달한다. **공기흐름 저항이 적어야** 주행풍이나 냉각팬이 보내는 공기가 잘 통과하여 열을 원활하게 운반할 수 있다.

② O: 가볍고 작으면 차량의 중량과 장착 공간을 줄일 수 있다. 동시에 냉각수의 압력과 주행 중 진동을 견뎌야 하므로, **경량·소형이면서 충분한 강도**를 갖추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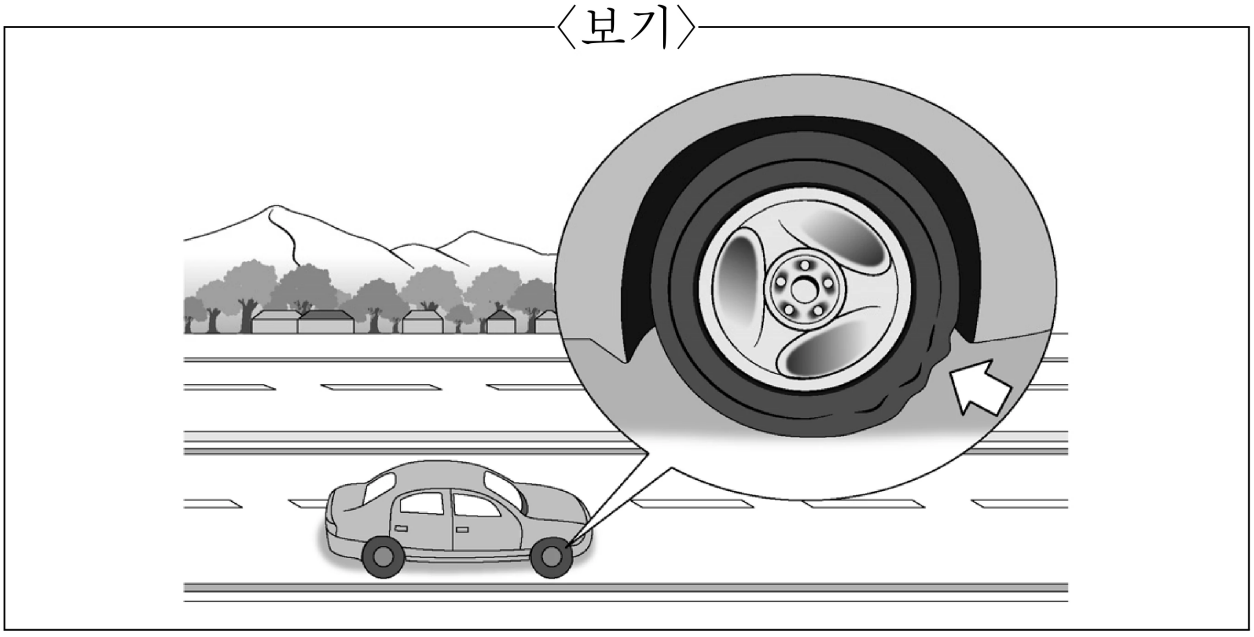
③ O: **냉각수 흐름 저항이 적어야** 냉각수가 방열기 내부를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다. 이는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의 부담을 줄이고, 기관에서 받은 열을 방열기로 운반하는 데 유리하다.

④ X: 단위 면적당 방열량은 같은 면적에서 얼마나 많은 열을 내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. 방열량이 적으면 필요한 열을 방출하기 위해 더 큰 면적이 필요하므로, 요구조건은 **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클 것**이다.

NoteBase

문 4. <보기>와 같이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 시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타이어 접지부 뒷부분이 부풀어 물결처럼 주름이 접힌 뒤 타이어 파손이 발생한다. 이 현상으로 옳은 것은?

〈보기〉



① 베이퍼 로크(Vapor lock) 현상

② 스탠딩 웨이브(Standing wave) 현상

③ 하이드로플래닝(Hydro-planing) 현상

④ 롤링(Rolling) 현상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로 고속 주행할 때 접지부 뒤에 물결 모양의 변형이 생기는 것이 **스탠딩 웨이브**이다. 반복 변형으로 열이 축적되면 타이어가 파손될 수 있다.

NoteBase

핵심 풀이

타이어는 노면에 닿을 때 눌렸다가 접지부를 벗어나면서 원래 모양을 회복한다. 공기압이 부족하면 변형이 커지고, 고속에서는 변형된 부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해 **접지부 뒤쪽에 물결 모양의 주름**이 생길 수 있다. 이것이 스탠딩 웨이브(Standing wave) 현상이다. 변형이 반복되면서 열이 축적되어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.

그림에서도 화살표가 가리키는 타이어 아래쪽에 주름진 변형이 보인다. 발문의 '낮은 공기압', '고속 주행', '접지부 뒷부분의 물결 모양 주름'이 이 현상을 식별하는 단서이다.

하이드로플래닝은 젖은 노면에서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**물막이 형성되어 접지력을 잃는 현상**이다. 타이어 자체가 물결처럼 변형되는 스탠딩 웨이브와는 발생 원리가 다르다.

NoteBase

문 5. 전자제어 엔진의 ECU에서 입력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냉각수온 센서 신호

② 흡기 온도 센서 신호

③ 스로틀 포지션 센서 신호

④ 인젝터 신호

정답 4번

간단한 해설

인젝터 신호는 ECU가 연료 분사를 지시하기 위해 인젝터로 보내는 **출력신호**이다. 엔진 상태를 감지해 ECU로 전달하는 센서의 입력신호와는 방향이 반대이다.

선지별 해설

① O: 냉각수온 센서는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한다. ECU는 이 신호로 **엔진의 온도 상태**를 파악하고, 냉간 시동 등 운전 조건에 맞게 연료 분사량을 보정한다.

② O: 흡기 온도 센서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한다. 공기는 온도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므로, ECU는 이 신호를 **공기량에 맞는 연료량 보정**에 이용한다.

③ O: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스로틀 밸브가 **얼마나 열려 있는지**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한다. ECU는 이 정보를 엔진의 운전 상태에 맞는 연료 분사 제어에 이용한다.

④ X: 인젝터는 ECU의 제어에 따라 연료를 분사하는 액추에이터이다. 인젝터 구동 신호는 ECU가 분사 시기와 분사량을 제어하려고 보내므로, **ECU에서 인젝터로 나가는 출력신호**에 해당한다. 입력신호는 센서가 감지한 상태를 ECU에 전달하는 신호이다.

NoteBase

문 6. 가솔린 엔진 자동차의 삼원 촉매 장치에서 환원반응을 통해 줄이는 배출가스 성분은?

① 탄화수소(HC)

② 질소산화물(NOx)

③ 일산화탄소(CO)

④ 이산화탄소(CO_2)

정답 2번

간단한 해설

삼원 촉매는 **질소산화물(NOx)을 환원하여 질소로 바꾼다**. 탄화수소(HC)와 일산화탄소(CO)는 산화반응으로 줄인다.

개념 구분

환원반응: 삼원 촉매는 질소산화물(NOx)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질소로 바꾼다. 이때 일산화탄소 등이 질소산화물의 산소를 받아 반응한다. 질소산화물은 **산소를 잃으며 환원**되므로, 문제에서 묻는 배출가스 성분에 해당한다.

산화반응: 탄화수소(HC)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, 일산화탄소(CO)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로 바뀐다. 두 성분을 줄이는 반응은 **환원이 아니라 산화**이다.

이산화탄소(CO_2):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산화될 때 생기는 생성물이다. 삼원 촉매에서 환원반응으로 제거하는 대상이 아니다.

NoteBase

문 7. <보기>에서 고휘도 방전 전조등(High Intensity Discharge Lamp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ㄱ. 할로겐 전구에 비해 조사거리가 향상된다.
ㄴ. 할로겐 전구에 비해 수명이 향상된다.
ㄷ. 할로겐 전구에 비해 전력소비가 많다.
ㄹ. 플라즈마 방전에 의해 빛을 방출한다.

① ㄱ, ㄴ
② ㄱ, ㄷ
③ ㄱ, ㄴ, ㄹ
④ ㄴ, ㄷ, ㄹ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HID 전조등은 필라멘트를 가열하는 대신 **기체의 방전**으로 빛을 낸다. 발광 효율이 높아 할로겐 전구보다 밝으면서도 **전력소비는 적다**.

보기별 해설

ㄱ. O: HID 전조등은 할로겐 전구보다 광량이 많아 도로를 더 밝게 비춘다. 전방의 물체를 더 먼 곳에서 식별할 수 있어 **조사거리가 향상된다**.

ㄴ. O: 할로겐 전구는 필라멘트를 가열하여 빛을 내므로 필라멘트의 소모와 단선이 수명에 영향을 준다. HID 전조등은 필라멘트 대신 전극 사이의 방전을 이용하며, 일반적으로 할로겐 전구보다 **사용 수명이 길다**.

ㄷ. X: HID 전조등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효율이 높아, 일반적인 정상 점등 상태에서 할로겐 전구보다 **전력소비가 적다**. 밝기가 높다는 이유로 전력소비도 많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.

ㄹ. O: 전구 내부의 기체가 이온화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를 이루고, 전극 사이의 **아크 방전**으로 빛을 방출한다. 필라멘트를 뜨겁게 가열하여 빛을 내는 할로겐 전구와 발광 원리가 다르다.

옳은 보기는 ㄱ, ㄴ, ㄹ이며,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8. <보기>에서 저항의 접속방법 중 병렬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ㄱ.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같다.
ㄴ. 어느 저항에서나 동일한 전압이 가해진다.
ㄷ. 많은 저항들이 연결될수록 합성저항은 작아진다.
ㄹ. 합성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다.

① ㄱ, ㄷ
② ㄱ, ㄹ
③ ㄴ, ㄷ
④ ㄴ, ㄹ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병렬접속에서는 각 저항이 같은 두 접속점에 연결되므로 **양단 전압이 같다**. 기존 저항에 병렬로 저항을 추가하면 전류가 흐를 경로가 늘어나 **합성저항이 작아진다**.

보기별 해설

ㄱ. X: 병렬접속에서는 각 저항의 양단 전압이 같지만, 흐르는 전류는 **저항값에 반비례**한다. 따라서 저항값이 서로 다르면 전류도 다르며, 각 저항값이 같을 때 전류의 크기도 같다.

ㄴ. O: 병렬접속은 각 저항의 양 끝을 각각 같은 두 접속점에 연결하는 방식이다. 각 저항이 연결된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같으므로 **모든 저항에 동일한 전압**이 가해진다.

ㄷ. O: 기존 연결을 유지한 채 저항을 병렬로 추가하면 **전류가 흐를 경로가 늘어난다**. 같은 전압에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므로, 회로 전체를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낸 합성저항은 작아진다.

ㄹ. X: 합성저항이 각 저항의 합과 같은 것은 **직렬접속**이다. 병렬접속에서는 각 가지 전류가 합쳐지므로 합성저항의 역수가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. 합성저항을 R, 각 저항을 $R_1, R_2, \ldots$라 하면 $\frac{1}{R} = \frac{1}{R_1} + \frac{1}{R_2} + \cdots$ 이다.

따라서 병렬접속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며,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.

NoteBase

문 9. 자동제한 차동기어장치(LSD: Limited Slip Differential)가 작동할 때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고속 곡선주행을 할 때 안전성이 좋다.

② 타이어의 미끄럼이 방지되어 타이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요철 노면을 주행할 때 뒷부분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.

④ 미끄러운 노면에서 출발이 쉽다.

정답 1번

간단한 해설

LSD가 작동한다고 해서 **고속 곡선주행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**. 곡선주행에는 좌우 바퀴의 회전속도 차이가 필요한데, 차동 제한이 강하게 작용하면 차가 곡선 바깥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.

선지별 해설

자동제한 차동기어장치(LSD)는 좌우 구동바퀴의 과도한 회전속도 차이를 제한하는 장치이다. 한쪽 바퀴가 헛돌 때 노면을 잘 붙잡는 다른 쪽 바퀴에도 구동토크를 전달하여 추진력을 확보한다.

① X: 곡선주행에서는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하므로 더 빠르게 돌아야 한다. LSD의 차동 제한이 강하게 작용하면 이러한 회전속도 차이를 억제하여 차가 곡선 바깥쪽으로 밀리는 언더스티어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. 따라서 LSD의 장점은 **과도한 헛돎을 억제하여 구동력을 확보하는 것**이며, 고속 곡선주행의 안전성이 좋아진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.

② O: 한쪽 구동바퀴의 **과도한 헛돎을 억제**하므로, 타이어가 노면과 불필요하게 마찰하며 마모되는 것을 줄여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. 여기서 미끄럼 방지는 구동 중 발생하는 과도한 헛돎을 줄인다는 뜻이며, 모든 종류의 미끄러짐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.

③ O: 요철 노면에서는 좌우 뒷바퀴가 노면을 누르는 힘이 달라져 한쪽이 헛돌기 쉽다. 뒷차축의 LSD는 과도한 차동을 제한하고 **좌우 바퀴의 구동력 불균형을 줄여** 차체 뒷부분의 좌우 흔들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. 이는 현가장치처럼 노면 충격에 의한 상하 진동을 직접 흡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.

④ O: 미끄러운 노면에서 한쪽 바퀴만 헛돌면 일반 차동기어로는 다른 쪽 바퀴에도 충분한 구동토크를 전달하기 어렵다. LSD는 **접지력이 남아 있는 바퀴에도 구동토크를 전달**하여 출발을 돕는다. 다만 양쪽 바퀴 모두 충분한 접지력을 얻지 못하면 출발이 어려울 수 있다.

NoteBase

문 10. 기관의 피스톤 링 플러터(piston ring flutter)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링 이음부는 배압이 적으므로 링 이음부의 면압 분포를 높게 한다.

② 실린더 벽에서 긁어내린 윤활유를 배출시킬 수 있는 홈을 링 랜드에 둔다.

③ 피스톤 링의 지름방향 폭을 좁게 하여 링의 장력과 면압을 감소시킨다.

④ 얇은 링을 사용하여 링의 무게를 줄여 관성력을 감소시킨다.

정답 3번

간단한 해설

③의 '장력과 면압을 감소시킨다'는 플러터 방지 방향과 반대이다. 링이 실린더 벽에서 뜨지 않도록 **충분한 장력과 면압을 확보**해야 하며, 관성력을 줄이기 위해 얇게 하는 것은 **축 방향 두께**이다.

선지별 해설

피스톤 링 플러터는 링이 링 홈 안에서 진동하거나 실린더 벽과의 밀착을 잃는 현상이다. 고속 운전에서는 링의 관성력이 커져 발생하기 쉬우며, 기밀이 나빠져 가스 누설과 윤활유 소비가 증가한다.

① O: 배압은 링 뒤쪽에서 링을 실린더 벽으로 밀어 주는 가스 압력이다. 이음부는 배압의 작용이 약하고 들뜨기 쉬우므로, **이음부의 면압을 높게** 분포시켜 밀착을 보완하면 플러터를 억제할 수 있다. 면압은 링이 실린더 벽을 누르는 접촉 압력이다.

② O: 링 랜드는 피스톤에서 링 홈 사이에 있는 부분이다. 여기에 **윤활유 배출용 홈**을 두면 실린더 벽에서 긁어내린 윤활유가 빠져나갈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. 과잉 윤활유가 링 주변에 고여 링의 움직임과 밀착을 방해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다.

③ X: 지름 방향 폭을 좁혀 장력과 면압을 낮추면 링이 실린더 벽을 누르는 힘이 약해져 밀착을 잃기 쉽다. 플러터 방지를 위해서는 지름 방향 폭과 강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**장력과 면압을 높이는 방향**으로 설계해야 한다. 이는 링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축 방향 두께를 얇게 하는 것과 구별된다.

④ O: 여기서 얇은 링은 **축 방향 두께가 작은 링**을 뜻한다. 같은 가속도로 왕복운동할 때 링의 질량이 작을수록 관성력도 작아지므로, 링이 관성력 때문에 링 홈의 접촉면에서 들뜨는 경향을 줄일 수 있다.

NoteBase

문 11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상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뜻하는 바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.

② 차마는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.

③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.

④ 교차로에서 차마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.

정답 1번

공통 해설

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, 또는 교차로 직전에 **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**할 수 있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차량신호등의 원형등화 중 적색 등화의 점멸
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(제6조제2항 관련)

https://d2u7om5rih5x7z.cloudfront.net/ox-images/drive-repair/1ENgZfxgVMKfSFW4-ooldceWkKFl7HC6T.webp

비고
1. 자전거등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.
2.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.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"보행자"는 "자전거등"으로 본다.
3.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.

NoteBase

문 12. 「도로교통법」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중 <보기>의 (가)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?

<보기>
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중 정기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_____(가)_____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.

① 1년
② 2년
③ 3년
④ 5년

정답 2번

공통 해설

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정기 안전교육은 계속하여 운영·운전하는 사람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**2년마다 실시**한다.

도로교통법 제53조의3(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
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(이하 "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.28, 2020.5.26>
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 <신설 2014.1.28, 2020.5.26>
2. 정기 안전교육: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

NoteBase

문 13. 「도로교통법」상 운전면허증의 반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경찰공무원은 취소처분을 받고 법정 기한 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.

③ 시·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6개월 후 돌려주어야 한다.

④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았을 때,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한다.

정답 3번

①

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**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**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제95조(운전면허증의 반납)
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(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)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(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2, 2024.1.30>
1.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
②

법정 반납 기한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, **경찰공무원은 그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**.

도로교통법 제95조(운전면허증의 반납)
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(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.30>

NoteBase

③

시·도경찰청장은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서 회수한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가 **정지기간이 끝난 즉시** 돌려주어야 한다. 종료 후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.

도로교통법 제95조(운전면허증의 반납)
③ 시 · 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. <개정 2020.12.22>

④

운전면허증 갱신은 기존 면허증의 반납 사유이다. 이 경우 반납 시점은 **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기존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**이다.

도로교통법 제95조(운전면허증의 반납)
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(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)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(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22, 2024.1.30>
5.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

NoteBase

문 14. 「도로교통법」상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.

③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없다.

④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,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정답 3번

①

보행자는 보도에서 **우측통행을 원칙**으로 한다.

도로교통법 제8조(보행자의 통행)
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1.10.19>

②

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**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**하여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제8조(보행자의 통행)
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(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)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0.19>

③

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**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**. 일방통행 도로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며,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.

도로교통법 제8조(보행자의 통행)
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2.1.11>
1.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(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

NoteBase

④

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**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**이다. 다만, **차도 횡단,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보도 통행금지,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**에는 예외가 인정된다.

도로교통법 제8조(보행자의 통행)
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,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NoteBase

문 15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다리, 목재,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
② 기(旗)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
③ 말 ·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
④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

정답 4번

①

사다리·목재 등 **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**은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(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)
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.
2. 사다리, 목재,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

②

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은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(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)
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.
5. 기(旗)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

③

말·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은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(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)
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.
1. 말 ·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

NoteBase

④

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**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보호 대상**이다. 그 장애를 이유로 차도 통행이 허용되는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.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(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)
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.
1. 말 ·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
2. 사다리, 목재,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
3.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
4.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
5. 기(旗)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
6. 장의(葬儀) 행렬
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(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)
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

NoteBase

문 16. 「도로교통법」상 도로에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의 조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영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정답 1번

①

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**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**.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아니라 운전 자체를 막을 의무이다.

도로교통법 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
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0.6.9>

②

어린이를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게 하지 않는 것은 **보호자가 지켜야 할 법정 금지의무**이다. 단순한 안전 권고가 아니라 보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이다.

도로교통법 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
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영유아(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12.30>

③

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, 보호자는 **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**.

도로교통법 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
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영유아(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12.30>

NoteBase

④

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에는 **보호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할 의무**를 진다. 어린이에게만 주의를 당부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정한 것이다.

도로교통법 제11조(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)
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(裝具)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NoteBase

문 17. 「도로교통법」상 명시된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의 난폭운전 행위가 아닌 것은?

① 횡단·유턴·후진 금지 위반
②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
③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
④ 앞뒤로 줄지어 통행

정답 4번

①

횡단·유턴·후진 금지 위반은 법이 열거한 난폭운전 대상 행위이다. 난폭운전은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·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·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한다.

도로교통법 제46조의3(난폭운전 금지)
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<개정 2011.6.8>
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,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6.9>
[본조신설 2015.8.11]

도로교통법 제46조의3(난폭운전 금지)
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,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6.9>
4.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 · 유턴 · 후진 금지 위반

NoteBase

②

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은 법이 열거한 난폭운전 대상 행위이다. 난폭운전은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·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·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한다.

도로교통법 제46조의3(난폭운전 금지)
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<개정 2011.6.8>
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,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6.9>
[본조신설 2015.8.11]

도로교통법 제46조의3(난폭운전 금지)
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,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6.9>
7.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

③

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법이 열거한 난폭운전 대상 행위이다. 난폭운전은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·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·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한다.

도로교통법 제46조의3(난폭운전 금지)
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<개정 2011.6.8>
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,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6.9>
[본조신설 2015.8.11]

도로교통법 제46조의3(난폭운전 금지)
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,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6.9>
8.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

NoteBase

④

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는 행위는 **법이 열거한 난폭운전 대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**.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**공동 위험행위**에 해당한다.

도로교통법 제46조의3(난폭운전 금지)
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,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6.9>
1.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
2.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
3.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
4.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 · 유턴 · 후진 금지 위반
5.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, 진로변경 금지 위반, 급제동 금지 위반
6. 제21조제1항 ·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
7.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
8.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
9.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· 유턴 · 후진 금지 위반

도로교통법 제46조(공동 위험행위의 금지)
① 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(危害)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6.9>

NoteBase

문 18. 「도로교통법」상 차량 운행 중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,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빠른 진로 변경을 통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정답 3번

①

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를 따라가는 운전자는 **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**를 확보해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제19조(안전거리 확보 등)
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②

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 주의하고, 그 옆을 지날 때 **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**를 확보해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제19조(안전거리 확보 등)
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,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8.11, 2020.6.9>

③

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**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**.
빠르게 진로를 변경하라는 규정이 아니다.

도로교통법 제19조(안전거리 확보 등)
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NoteBase

④

위험방지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**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**.

도로교통법 제19조(안전거리 확보 등)
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NoteBase

문 19. 「도로교통법」상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.

②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관할 시·도지사의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.

③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.

④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·표지, 보험가입,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정답 2번

①

모든 차의 운전자는 **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**.

도로교통법 제51조(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)
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. <개정 2014.12.30>

②

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**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**. 관할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.

도로교통법 제52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)
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.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 · 표지, 보험가입,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.28, 2014.11.19, 2017.7.26>

NoteBase

④

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자동차는 **도색·표지, 보험가입, 소유 관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**을 갖추어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제52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)
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.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 · 표지, 보험가입,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.28, 2014.11.19, 2017.7.26>

NoteBase

문 20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상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
②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
③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
④ 안개로 가시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

정답 1번

①

눈이 **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**에는 **최고속도의 20%를 줄인 속도**로 운행해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(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)
②비 · 안개 ·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. 다만, 경찰청장 또는 시 · 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.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0.7.9, 2020.12.31, 2021.12.31>
1.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
나.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

②

폭우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 최고속도의 20%가 아니라 **50%를 줄인 속도**로 운행해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(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)
②비 · 안개 ·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. 다만, 경찰청장 또는 시 · 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.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0.7.9, 2020.12.31, 2021.12.31>
2.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
가. 폭우 · 폭설 ·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

NoteBase

③

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20%가 아니라 **50%를 줄인 속도**로 운행해야 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(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)
②비 · 안개 ·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. 다만, 경찰청장 또는 시 · 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.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0.7.9, 2020.12.31, 2021.12.31>
2.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
나.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

④

안개로 **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**이면 최고속도의 **50%를 줄인 속도**로 운행해야 한다. 가시거리 50미터 이내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(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)
②비 · 안개 ·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. 다만, 경찰청장 또는 시 · 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.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0.7.9, 2020.12.31, 2021.12.31>
2.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
가. 폭우 · 폭설 ·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

NoteBase